

'9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운영위원회 7
- 행정재무위원회13
- 시민보사위원회36
- 도시건설위원회53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정전반에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목적적이고 능률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요구함과 아울러 확보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96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함.

○ 기 간

1995. 12. 2 (1일간)

○ 점검대상 및 사무의 범위

1)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3호
- 구의회사무국

2) 대상사무의 범위

- 구의회사무국 업무

○ 감사반 편성

(가나다순)

위원장	간사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배기환	김충웅	김동철, 문종준, 손병욱, 손영상 심용진, 전병운, 조용호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 감사일정및 장소

일 정	대 상	장 소	감 사 방 법	비 고
'95. 12. 2	의회사무국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개 별 감 사 합 동 감 사	※ 장소는 수감기 관에서 선정하 여 수감 1일전 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필요시 현장확 인 실시

○ 감사요령

1) 감사방법

-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업무별 개별감사를 실시
- 개별감사후 해당국 전반에 관한 대한 감사는 질의, 답변형식의 합동감사 실시

2) 감사자료제출요구

-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감사실시 3일전까지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3) 증인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를 출석케하여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기타 필요시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다.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구의회사무국</p>	<p>제목 : 방호, 경비강화 및 의원출입 관리절저</p> <p><현황 및 문제점></p> <p>○ 의원출입시 수위실 근무상태가 좋지 않으며 누가 출입하는 지를 확실히 할 것.</p> <p><처리요구내용></p> <p>○ 의원 출입시 의원에게 예우를 철저히 하여 의원예우에 만전을 기할 것.</p> <p>제목 : 불용예산 사유</p> <p><현황 및 문제점></p> <p>○ 사무국운영 급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 6,000만원 ○ 의정활동비 의정활동, 홍보비, 의원수당등 2,300만원등</p> <p><문제점></p> <p>○ 급여는 현원이 아닌 정원편성 ○ 일반운영비로 시설비 사무용품및 일반인쇄비등 자산취득비 추정반영및 단가 조정 ○ 업무추진비는 제1대의원 사업추진부진(제2대 선거중점)</p> <p><처리요구내용></p> <p>○ 의정활동비로 의정활동 홍보는 지역신문에 홍보하였으나 의원수당은 회의참석을 위주로 집행</p> <p>제목 : 공문 편철시 색인목록 미작성</p> <p><현황 및 문제점></p> <p>○ 각종문서, 공문편철시 색인목록 미작성으로 필요한 부분 색인할시 시간의 지연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구의회사무국</p>	<p><처리요구내용></p> <p>○ '95년말 서류 편철시 해당 직원 각각에 색인목록 작성하여 서류편철토 록 조치</p> <p>제목 : 불필요한 예산낭비</p> <p><현황 및 문제점></p> <p>○ 자매결연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고성군 : '95. 9. 14 · 전남 영암군 : '95. 10. 17 · 충남 청양군 : '95. 10. 24 <p>※ 중국 북경시 문두구구</p> <p>○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행사시 구청과 의회가 별도로 행사를 주최하기 때문에 이중 예 산낭비 <p><처리요구내용></p> <p>○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구청과 의회와 공동주최하여 예산을 절감시 킬 것.</p> <p>제목 : 국장 관공비의 활성화</p> <p><현황 및 문제점></p> <p>○ 의정업무추진및 기타 업무운영비 및 의회 업무및 의정활동비로서 총예 산 2,500만원에 11월30일 현재 1,286만원 집행하였습 미집행 1,214만원</p> <p>○ '95 제2대 구의회 선거로 인하여 의원활동이 활발하였으나 부정선거 오인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정활동에 전반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소극적인 자세였음.</p> <p><처리요구내용></p> <p>○ 각 구청및 사무국 관계자 의원과의 간담회등을 통하여 업무협조에 만 전을 기할 것.</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구의회사무국	<p>제목 : 차량차단기 근무요원 관리</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차량 출입시 차량차단기 근무요원이 의원차량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며 근무요원들이 수시로 바뀌어 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없음.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차단기 근무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의원차량을 숙지하여 의원예우에 만전을 기할 것. <p>제목 : 국장 판공비 내역</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업무및 의정활동비 예산 500만원으로 183만원을 현재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30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와 병행하여 집행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인 사업으로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등을 통하여 집행토록 할 것임. <p>제목 : 도서구매</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500만원의 도서구매비를 연말이 되어 낭비적 예산집행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며, 도서구매계획을 세워 구입토록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성있게 도서구매할 것.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구의회사무국</p>	<p>제목 : 의장표창 활성화</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표창 발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회 18명 발급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기관에서 발급요청시에 주로 발급하는 바 경직성을 띄고 있음.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위하여 숨어서 봉사활동하는 구민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것. ※ 표창수여시 부상 병행 <p>제목 : 사무국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전환</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직원 <table border="0"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5px;">{</td> <td>일반직 13</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5px;">{</td> <td>별정직 7</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5px;">{</td> <td>기능직 7</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직2(문서전달1, 사무보조1)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직은 신분보장이 없돼 이직율이 높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많음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상용직 전환 필요. 	{	일반직 13	{	별정직 7	{	기능직 7
{	일반직 13						
{	별정직 7						
{	기능직 7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무위원회)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목적적이고 능률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요구함과 아울러 확보한 각종자료및 정보를 '96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 기 간

1) 1995. 11. 27~12. 3 (7일간)

○ 점검대상및 사무의 범위

1)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각호 해당기관
 - 3실(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총무국(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여권과)
 - 재무국(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 각동사무소

2) 대상사무의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자치구 사무
- 각 국소관별 주요감사 사무 별첨

○ 감사반 편성

(가나다순)

위원장	간사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이용주	손영상	김진국, 김충웅, 손병욱, 유남열 임창수, 정종태, 최수영, 황호천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사항

일 정	대 상	주요 감사사항	감사방법	비 고
'95. 11. 27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행정의 목적 및 합리성 여부 ○ 예산의 집행 및 낭비 여부 ○ 부서간 업무의 중복 여부 ○ 주민편익과 적정성 여부	개 별 감 사 및 현 장 확 인	※ 장소는 수감기관에서 선정하여 수감 1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95. 11. 28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 집행상의 문제발생 및 민원제기 여부 ○ 각종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처리		
'95. 11. 29	지적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 신규 시책 추진을 위한 계약 관계의 적정성 여부 ○ 예산회계 처리 및 이월, 절차의 적정성 여부		
'95. 11. 30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여 권 과 각 동사무소	○ 계약 및 의무이행, 감독의 시행 여부 ○ 지출원인 행위의 근거 및 집행 적정성 여부 ○ 인사 및 교육, 감사의 적정성 여부		
'95. 12. 1 ~ '95. 12. 3	3 일 총무국 재무국 동사무소	○ 정보공개 및 문서관리의 적정성 여부 ○ 각종 인, 허가 업무처리 현황 ○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 등 주민참여 및 효과성	개 별 감 사 및 공 개 질 의 답 변	

○ 감사요령

- 감사선언(위원장)
- 위원장의 인사
- 관계공무원의 선서
- 업무현황보고(간부소개 및 현황보고)
- 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개별감사
-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 위원장의 감사강평
- 감사종료선언

○ 유의사항

- 1)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사생활침해 제류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2) 감사상 주의의무(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8)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행정사무감사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7)
감사대상사무가 감사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거나 의결로 제척시켜야 한다.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및 보고

○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 일일보고서및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
- 간사는 감사일일보고서와 의견서를 종합 위원장에게 보고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전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위원장과 간사가 사전에 초안작성, 전문위원과 검토후 상정)

○ 본회의 상정 의결

○ 주요 감사사항및 지적사항 - 별첨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기획예산과</p>	<p>제목 : 각 사업예산 집행 실태</p> <p><현황 및 문제점></p> <p>○ 사업계획의 정확한 수립과 판단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실제사업추진시 예산을 전용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각과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의 전용을 막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p>
<p>세무관리과</p>	<p>제목 : 체납정리실태</p> <p><현황 및 문제점></p> <p>○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증가 구재정및 세수입 증대에 어려움이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구재원 확충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체납세 징수를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p>
<p>시민봉사실</p>	<p>제목 :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p> <p><현황 및 문제점></p> <p>○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무의욕증진및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고과상의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96년도 부터는 이제도가 폐지 될 예정임.</p> <p><처리요구내용></p> <p>○ 타부서와 달리 대민봉사부서로써 주민을 직접대하는 우리 구청의 얼굴로 표현되므로 절대적으로 인사관리상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느껴 시민봉사실에 대한 가점제도의 계속유지가 요구됨.</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각동사무소	<p>제목 : 각종 장비및 비품 관리 실태</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및 비품(방역소독기, 비상땀프등) 관리가 부실하여 유사시 장비기동이 되지않아 신속한 상황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동장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및 비품을 수시로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 유사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를 실시 하도록 할 것.
교통지도과	<p>제목 :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실태</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다한 단속 업무량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현장지도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95. 단속실적 : 총 222 건<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 속 과 116 건- 교통지도과 141 건(중복지도단속 35 건)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중한 업무및 처리를 원활히 하기위하여는 담당 직원의 인력 보강이 요구됨.
청 소 과	<p>제목 : 청소대행업체 운영및 구청에서 직영하는 청소운영실태</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대행업체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쓰레기 미수거, 재활용품 수거가 잘 되고있지 않아 주민불편 및 민원이 있음.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행업체별로 관할하는 지역배정을 앞으로는 동별로 적절히 배분하여 쓰레기 수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행업체 관리에 더욱 주의가 요구됨.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세무관리과</p>	<p>제목 : 고액 체납자 관리 실태</p> <p><현황 및 문제점></p> <p>○ 50만원이상 체납금액이 총 4,186,620,230원으로 현재 세무분야 직원의 인력부족으로 체납정리및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지연에 따른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체납정리 특별 기동반동을 운영 체납정리가 신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p>민 방 위 과</p>	<p>제목 : 민방위 대피시설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p> <p><현황 및 문제점></p> <p>○ 현재 관리되고 있는 대피 시설은 수용 능력이 적고 노후하여 일제 정비 가 필요하며 급수시설중 일부는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임.</p> <p><처리요구내용></p> <p>○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사후 유지관 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재 무 과</p>	<p>제목 : 수입증지 판매 및 운영 현황</p> <p><현황 및 문제점></p> <p>○ 현재 시상조회에서 수입증지의 판매및 운영관리하면서 판매액의 3/100 을 상조회에 지원하고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조례 개정등 사안을 검토하여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문화공보실	<p>제목 : 관변 단체 예산 지원 현황</p> <p><현황 및 문제점></p> <p>○ 현재 자유 총연맹에 대한 예산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p> <p><처리요구내용></p> <p>○ 정부 시책 및 예산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원 중단이 요망됨.</p>
총 무 과	<p>제목 : 인사 고충심사제도의 활용 현황</p> <p><현황 및 문제점></p> <p>○ 현재 직원의 근무 애로시 고충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p> <p><처리요구내용></p> <p>○ 전직원이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사 상담 창구 운영 등 활성화가 요구됨.</p>
지 적 과	<p>제목 :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실태</p> <p><현황 및 문제점></p> <p>○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력 부족 및 업무의 과다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p> <p><처리요구내용></p> <p>○ 인력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담당 직원의 충원이 요구됨.</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건설관리과</p>	<p>제목 : 대림동 629번지 도로사용 허가관계</p> <p><현황 및 문제점></p> <p>○ 대림동 629번지 160.06㎡ 도로 사용허가증 허가면적에 비하여 넓은 길 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지는 상태이며 차도를 인도로 사 용하여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미관이 불결하고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p> <p><처리요구내용></p> <p>○ 금년말로 되어있는 사용허가를 불허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p>생활체육과</p>	<p>제목 : 대림운동장 관리비 지출실태</p> <p><현황 및 문제점></p> <p>○ 대림운동장 관리인 임부노임이 4,131,000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으나 연 간운영비가 모자라서 영세민 취로 사업비에서 1,428,500원을 전용하여 노임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p> <p><처리요구내용></p> <p>○ 실질적인 노임을 예산에 반영하여 생활체육과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도 록 조치하기 바람. (현재 재료비라는 명목으로 된 예상과목을 → 노임으로 정정 지불하기 바람)</p>
<p>총 무 과</p>	<p>제목 : 인감 발급 제도 개선</p> <p><현황 및 문제점></p> <p>○ 현재 우리나라 인감 발급제도는 직접증명 발급제도로 있어 지방 공무원 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업무처럼 원부를 복사 발급하는 간접 증명 발급 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요구됨.</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여 권 과	<p>제목 : 여권발급 민원처리 실태</p> <p><현황 및 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여권과 개설당시 1일 평균 발급전수를 500건으로 예상 하였으나 실제 처리 건수가 폭주하여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민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됨.2. 민원실 안내 시설등 미흡, 민원인 집중시 혼잡 <p><처리요구내용></p> <p>○ 늘어나는 업무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정 직원을 배정 업무지연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시설을 조속히 비치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토록 하기바람.</p>
기획예산과	<p>제목 : 예산 미집행 현황</p> <p><현황 및 문제점></p> <p>○ '95년도 예산중 각 사업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 됨.</p> <p><처리요구내용></p> <p>○ 예산편성전에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p>
시민봉사실	<p>제목 : 전화민원 신청 발급시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 현황</p> <p><현황 및 문제점></p> <p>○ 신청민원 건수의 약 7.6% (발급통수 8.9%)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 임.</p> <p>가. 이러한 미교부 민원에 대한 교부대책 미수립 나. 신청일 이후 15일이 경과되면 폐기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예산및 인력 낭비가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미교부 민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후 교부대책 수립 요망.</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문화공보실	<p>제목 : 예산 집행 관련 증빙서 기재사항 미비</p> <p><현황 및 문제점></p> <p>가. 공보실 비품구입시 관련 서류및 증빙서 증 영수증(간이영수증)에 간혹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있음.</p> <p>나. 예산 집행 관련 첨부 서류(인쇄물)중 1개 계약업체가 타업체의 견적서를 위장작성 제출 계약을 한 사례.</p> <p><처리요구내용></p> <p>○ 상거래 확인및 필요 기재사항(상호및전화번호)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소액, 소수업체의 견적이라도 관련서류의 작성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p>
총 무 과	<p>제목 : 각동 민원상담관 위축 현황</p> <p><현황 및 문제점></p> <p>○ 현재 각동에서 운영중인 민원 상담관 제도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각동별 민원처리 현황 또는 행정수요를 감안 각동별로 적정 배치 대민 친절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p>
문화공보실	<p>제목 : 서울신문 구독및 배부현황</p> <p><현황 및 문제점></p> <p>○ 통장에게는 100% 전달되고 있으나 반장들에게는 50%정도 밖에 안되고 있어 통, 반장들간의 민원의 소지가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통, 반장들에게 구독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배부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문화공보실	<p>제목 :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 지도감독 현황</p> <p><현황 및 문제점></p> <p>○ 음반 비디오물 및 야간 비디오방등 판매 대여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요원의 태부족으로 실제 지도감독및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기 바람.</p>
재 무 과	<p>제목 : 수입증지판매 현황</p> <p><현황 및 문제점></p> <p>○ 수입증지판매 목표 예상 착오로 실제 약2억5천만원정도 세수입이 감소 하였음.</p> <p>- 95년도 목표액 1,280,527,000원(추경예산포함) 10월 31일 현재실적 : 895,648,000원(목표액대비 69.9%)</p> <p><처리요구내용></p> <p>○ 추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기 바람.</p>
감 사 실	<p>제목 : 감사실 운영및 업무추진 실태</p> <p><현황 및 문제점></p> <p>가. 현재 직원 22명으로서 주민과 긴밀한 유대및 각종 업무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p> <p>나. 공직자 비리관계 직무 수행시 감사의 한계가 있음.</p> <p>다. 근무시간중 이발소, 목욕탕 출입등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무단이석, 사적출장, 출장후 미귀청등)에 관한 직무감찰 활동 미흡</p> <p>라. 환경 순찰 적출 사항 정비 미처리 정비전, 후 보고및 증빙 서류(사진) -첨부 미비</p> <p>마. 주민의 인적, 물적 사항에 피해를 주는 화재예방에 관련된 순찰계획 미흡</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감 사 실	<p>〈처리요구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정원을 조정 적정 인원을 배치 보다 강한 권한을 가지고 직무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 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임. 2. 재래시장및 인구밀집 공장지대, 백화점등에 대한 화재예방 순찰 계획의 수립 시행이 요구됨.
재 무 과	<p>제목 : 주차장 시설비 예산 미집행</p> <p>〈현황 및 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95년도 예산액중 91% 분에 해당하는 130억원이상을 미집행 2. '95 8/28일 계약한 노상주차장의 낙찰가격의 과다로 인한 운영의 부작용이 예상됨. 3. 우리구 재정 수입중 29.1%를 차지하는 28,285백만원의 세외수입에 대한 증대방안 미흡 <p>〈처리요구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시설의 활용방안 모색및 주차시설 확대를 조속히 실시할 것. 2. 주차장 계약 체결시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과 사전 담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됨. 3. 각과별 세외 수입 창출및 재무과 산하 세외수입제를 신설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9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995년 12월 7일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9회 정기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1995년 12월 7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박충희)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 기존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쾌적하고 넓은 집무환경 조성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사무 능률 재고를 위한 동사무소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것임.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영훈)

본 관리계획의 내용인 도림2동 청사부지 매입전에 대해서 현청사의 사용가능여부, 현부지의 재건축가능 여부및 새로 매입할 신청사 부지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 동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대민서비스와 동행정 업무의 능률적 달성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부지의 재건축 적정여부는 현부지가 부정형일 뿐만 아니라 지적도를 참고해보면 진입구가 없어 재건축시 타인 소유의 토지 침범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생각되며, 새로 매입할 신청사 부지는 도림동 222-7번지에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매입예정면적은 991.74㎡(300평)이며 현재 나대지로 있어 동청사 신축부지로는 적합하나 다만, 도림2동 관할구역으로 보아서 지리적으로 너무 일부분으로 치우치고 15M 도로에 접하고 있다고는 하나 15M도로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 안 의 결

'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4
----------	----

제 출 일 자 : 1995. 11. 2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의회 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 기존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쾌적하고 넓은 집무환경 조성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사무능률 제고를 위한 동사무소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96 구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 (목록 : 별첨)

-취득 : 1건 토지 : 1필지 991.74㎡(300평)

I. '96 구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전수	수량	금액	전수	수량	금액	전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991.74	1,302,000				1	991.74	1,302,00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1	991.74	1,302,000				1	991.74	1,302,000	
	2.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3.매각	토지 건물 기타										
무상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9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 소 성 명	비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1	대 지	도림동 222-7	991.74	1,302,000	상 반 기	도림2동 청 사신축 부지	영등포구 도림동 222-1 호진제강(주)	

연 번 : 1

(취 득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토지소유자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취득대상 면 적	소 유 자		비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도림동 222-7	대 지	1706	991.74	영등포구 도림동 222-1	호진제강(주)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 (현용도)	토 지 의 특 성	비고
나 대 지	준공업지역 15m 도로에 접함	

3. 취득 사유

- 현청사가 노후 및 협소하여 민영주택(아파트)건설등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인 수용곤란 예상
- 도림2동 관내에는 현부지 매입예정지(호진제강(주)이전지)외에는 청사 신축부지로 확보할만한 토지가 전무한 실정

4. 소요 예산

부지매입비 : 1,302,000천원 년부매입 (96년도 7억원 예산반영)

5. 현 황 도

<u>범 례</u>	
사유지 :	
(취득부분)	
<input type="text"/>	
담장선 :	
<h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년 12월 7일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9회 정기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1995년 12월 7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박충희)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266조제3항및 제4항에 규정한 감면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종합토지세의 감면율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감면대상(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관 사업용 토지 범위)
 - 구매, 판매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
 - 보관, 가공, 무역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
 - 생산및 검사사업용 토지
 -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안제28조)
- 감면율
 - 구관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함(안제28조)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영훈)

동조례 제19조(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를 개정하고 제28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제19조의 개정은 조문내용은 변경됨이 없이 다만 제2절 재산세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동산"을 "건축물"로 개정하고 지구수정만 한 것이며, 신설하는 제28조(구관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는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종합토지세를 경감, 또한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협동조합에서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기 위하여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와 경감율을 규정하는 조항이며, 다만, 동조례 개정안 28조(구관사업등토지에대한경감)는 '95. 4. 8 조례개정으로 폐지하였다가 금번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은 지난 '94. 12. 12 개정된 것이므로 '95. 4. 8 조례개정시 이미 개정된 관계법령을 신중히 검토하였다면 동일한 조례를 불필요하게 자주 개정하여 구정과 법의 안정을 저해하는 일은 없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금번 동조례의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내용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 안 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
----------	----

제 출 일 자 : 1995. 11. 2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 감면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종합토지세의 감면률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감면대상(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협동조합중앙회, 축산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관사업용 토지 범위)

- 구매, 판매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
-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
-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안 제28조)

나. 감면률

구관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함. (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 련 법 규 :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

나.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다. 첨 부 : 개정조례안

별첨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중 “부동산”을 “건축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을 삭제하고 “다음의 것”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건축물”로 하며

동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중 “부동산”을 “건축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구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을 “재산세의”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구관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 시설용 토지

②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p> <p>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u>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u>”이라 함은 <u>다음의 것</u>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u>부동산</u>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u>부동산</u>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u>부동산</u> 4. 농어민 교육시설용 <u>부동산</u> <p>②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u>구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u></p>	<p>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p> <p>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u>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u>”이라 함은 <u>다음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용 건축물</u>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u>건축물</u>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u>건축물</u>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u>건축물</u> 4. 농어민 교육시설용 <u>건축물</u> <p>②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u>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u></p>	<p>제28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u>직접 사용하는 부동산</u>”이라 함은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u>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u>토지</u>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 사업용 <u>토지</u>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u>토지</u> 4. 농어민 교육 시설용 <u>토지</u> <p>②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u>종합토지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년 12월 7일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2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9회 정기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1995년 12월·7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가. 제안이유

- 국·내외여행업 등록 및 행정처분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 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거 통지 하여야 함(안 제2호)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안 제4조)
- 과징금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 강제징수(안 제5조)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영훈)

동조례는 '95. 6. 20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중 일부업무(국내, 외여행업)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관광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게 되는 것으로 동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은 관광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례에서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조항인, 과징금 납부통지, 납부연기사유와 방법, 체납시 가산금및 독촉절차, 강제징수 방법등을 규정하여 새롭게 첨부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동조례 제정(안)은 '95. 5. 9 서울시에서 권한 재위임 하기전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각구에 시달한 준칙안에 따르는 것으로써 우리구 여건상 특별하게 규정하거나 조정하여야 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 안 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31
----------	----

제 출 일 자 : 1995. 11. 2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국내·외여행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 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거 통지 하여야 함.(안 제2조)
- 나.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안 제4조)
- 다. 과징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 강제 징수(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5. 6. 20. 서울특별시규칙 제2700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4. 조례(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징수하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통지) 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의 납부연기)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연기신청서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화재 및 도난 등의 재해를 당하여 과징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 2. 사업상의 극심한 손해를 입어 과징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4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년 12월 7일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9회 정기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1995년 12월 7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권한위임조례로 동장에게 기위임한 사무중 건축과 관련사무의 위임내용중 일부가 관련부서간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동장에게 기위임하여 실시하고 있는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의 수리' 사무의 단서규정을 삭제(안 별표 제5조)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영훈)

동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별표위임사무 제5호 옹벽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업무가 건축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이나 "다만, 미관지구내의 행위제한"이라는 단서규정으로 인하여 미관지구내의 옹벽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업무는 동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그간 관계처리 부서간의 업무분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동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 안 의 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민보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정전반에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목적적이고 능률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요구함과 아울러 확보한 각종자료및 정보를 '96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함.

○ 기 간

1) 1995. 11. 27~12. 3 (7일간)

○ 점검대상및 사무의 범위

1)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각호 해당기관
 - 시민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 각동사무소

2) 대상사무의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자치구 사무
- 각 국소관별 주요감사 사무 별첨

○ 감사반 편성

(가나다순)

위원장	간사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이명훈	전병운	김동철, 김형수, 노동우, 박정자 이정운, 서홍선, 심용진, 최락희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 감사일정및 장소

일 정	대 상	장 소	감 사 방 법	비 고
'95. 11. 27 ~ 12. 1	시 민 국 보 건 소 동사무소	영등포구보건소 회 의 실	개 별 감 사	※ 장소는 수감기 관에서 선정하 여 수감 1일전 에 통보하여야 한다.
'95. 12. 2	시 민 국 보 건 소 동사무소	영등포구보건소 회 의 실	합 동 감 사	※ 필요시 현장확 인 실시

○ 감사요령

1) 감사방법

-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관한 현황보고, 청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업무별 개별감사를 실시
- 개별감사후 해당국 전반에관한 대한 감사는 질의, 답변형식의 합동감사실시

2) 감사자료제출요구

-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감사실시 3일전까지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3) 증인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를 출석케하여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기타 필요시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다.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가정복지과	<p>제목 : 도립교회 경로식당 운영</p> <p><현황 및 문제점></p> <p>○ 도립교회 경로식당 운영에 연간예산이 국비 및 지방비 포함 보조금 17,300,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분기별로 일괄적인 수령액 영수증만으로 처리 운영되고 있어 세부적인 운영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분기별로 일괄적인 지급내역에 따른 월별 개인별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정산하기 바람.</p> <p>제목 : 노인정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p> <p><현황 및 문제점></p> <p>○ 노인정(구립 및 사립)에 운영지원비를 지불하고 정산서에 영수증 첨부가 불충분한 문제점의 제시와 노인정 운영 지원비 예산편성 계상시에 노인정 개소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점 제시 (예 : 실제는 91개소, 예산편성 계상에는 100개소)</p> <p><처리요구내용></p> <p>○ 앞으로는 노인정(구립 및 사립)에 운영지원비를 지불하고 정산서에 영수증 첨부를 확실히 할 것과, 노인정 운영지원에 예산편성 계상시에 노인정 개소를 엄밀히 파악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요구</p> <p>제목 : 청소년 독서실 운영 실태파악</p> <p><현황 및 문제점></p> <p>○ 독서실 이용도에 비하여 유급직원이 너무 많음. ○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등 관계증빙서류가 비치되지 않았으며 ○ 관내 거주자가 아닌 타지역 유급직원이 많음. ○ 지도점검 후 지도점검에 대한 복명서가 없으며 ○ 어린이집 유급직원에 대한 근태파악과 지도점검이 필요함.</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가정복지과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도에 따라 유급직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바람.○ 지원금에 대한 수령인 영수증등 관계서류를 비치하기 바람.○ 가급적 관내 주민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지도점검 후에는 복명서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기 바람.○ 어린이집 유급직원 근태파악에 따른 결과조치 요망. <p>제목 : 지도감독</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독소홀 (복명서가 없음) - 전반적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출장후 복명서 제출요 <p>제목 : 사회복지에 관한 건</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노인건강진단 동별 시간(오전, 오후)한시간 진단2) 독서실 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인력과다운영 (100명 미만 2~4명)3) 결식노인 집중관리 (60명)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4시간으로는 주민계몽 부족 (알리는 시간 부족)으로 주단위 동별 실시 요망 (52주)<ul style="list-style-type: none">※ 1주간씩 상주 가지적으로 노인건강진단 및 지역진단실시 요망함.2) 독서실 인력 각동 1명씩 절감 요3) 지역별 관리 (신길지역, 대림지역 등) <p>제목 : 부당 예산집행</p> <p><현황 및 문제점></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가정복지과</p>	<p>○ 대림1동 어린이집 전세금 1억2천만원 월세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당연히 추경예산편성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처리요구내용></p> <p>○ 앞으로는 본 예산 사용변경시는 갖고있지 말고 추경예산에 편성집행토록 할 것.</p> <p>제목 : 예산전용 부당지적</p> <p><현황 및 문제점></p> <p>○ 양평2동 어린이집 철거에 있어 당초 예산도 없는 가운데 추경예산편성치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철거비용을 시설비로 전용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됨.</p> <p><처리요구내용></p> <p>○ 앞으로 예산이 남았다고 추경에 항목을 변경치 않고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p> <p>제목 : 가정의레업소 지도감독</p> <p><현황 및 문제점></p> <p>○ 가정의레업소 지도감독 소홀 (’95. 10. 10 이후 상부지침에 의거 계획 수립)</p> <p><처리요구내용></p> <p>○ 지도감독이 없어 앞으로는 자체계획을 년초에 수립,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임.</p> <p>제목 : 막연한 가상예산을 집행 결산처리한 내용</p> <p><현황 및 문제점></p> <p>○ ’95년 2월 청소년 풍물놀이마당 행사중 사업계획에 소요예산 총 1,130,000원중 물품파손 변상비가 단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120,000원을 책정하였으나, 그 예산의 항대로 사실무근하게 집행 되었음은 공정을</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가정복지과	<p>기해야할 관계공무원이 의혹을 받게 될뿐 아니라 행사장의 장비운송비로 120,000원을 집행하는 것은 당구청 내에 많은 수송장비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활용을 않는 것은 구예산에 막대한 예산절감이 예상됨.</p>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행사는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여 집행하고 그 잔액을 정확히 활용이나 불용액으로 정산되어야 된다고 사료됨.
사회복지과	<p>제목 : 거택보호자의 사랑의 야구르트 공급</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택보호자의 사랑의 야구르트 공급은 명분과 취지는 좋으나 대외적인 홍보로 보아 생색은 구청장이 내고 성금의 분담금은 각동에 의무적으로 분담케 하여 주민이나 단체에 무리한 할당을 주어 민원이 야기함은 물론, 특히 일부 동에서는 특정유희음식업 단체에 수십만원씩의 성금을 징수하여 관공서와 특정업소 단체와의 밀착된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임.○ 성금의 입금 또는 납부방법이 일관성이 없어 그 통계나 회계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원자에게는 소정의 성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함에도 합홍처사업은 지방자치행정에 불신을 주고 있는 실정임.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행사의 취지가 꼭 필요하다면 특정단속대상업소나 주민에게 막연하게 성금을 할당모금하지 말고 구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집행하거나 각동 형편에 맞게 성금후원자와 수요자가 직접 결연을 해야 된다고 사료됨.○ 기금관리 및 입금통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통장을 발급 관리하고 회계장부도 별도 작성하여야 된다고 사료됨. <p>제목 : 장애인 복지시설 『한사랑마을』 증축문제에 관한 건</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에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시설 증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경비 15억4천9백만원중 거의 대부분인 14억4천9백만원이 국비, 시비로 충당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도 『한국복지재단』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사회복지과</p>	<p>에서 맡고 있고 영등포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형편도 아닌 마당에 시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서류상의 절차만 복잡하게 하고 우리구에서 관리 책임 소재만 떠매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더우기 장애인 담당 직원 한사람으로 감당하기에는 업무상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봄.</p> <p><처리요구내용></p> <p>○ 과거 영등포 관내에 있었던 시설을 이전한 것이라고 하여 독자사업도 아닌 것을 굳이 우리구에서 계속 관장해야할 필요가 없음. 업무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서울시로 이관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p> <p>제목 :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회수 건</p> <p><현황 및 문제점></p> <p>○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처리 미실적 ○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처리 미징수금액 결손처리가 안되었음.</p> <p><처리요구내용></p> <p>○ 의료보호법 제18조(대불금 결손처리)에 명시되고 있는 바 처리가 안 됨. ○ 대불금 회수금액이 '85년 이후 '95. 11월 현재까지 처리 및 징취사항의 특단조치 및 관리가 부진함. (예 : 개별관리만 있고 통계진수, 금액등 전무한 사항임)</p>
<p>위 생 과 가정복지과</p>	<p>제목 : 심야 변태 영업단속 및 사설어린이집 지원현황</p> <p><현황 및 문제점></p> <p>1. 심야변태 영업 단속 실적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이 부진함. 2. 사설어린이집 지원(영세자녀 간식비 지원)을 구비로 하고 있으나 예산 사용에 대한 감독이 소홀함.</p> <p><처리요구내용></p> <p>1. 심야변태 영업 단속 실적에 대한 정확한 행정처분을 하기 바람. 2. 예산 사용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하기 바람.</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위 생 과	<p>제목 : 부정식품 단속요원의 징수에 관한 건</p> <p><현황 및 문제점></p> <p>○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을 바라보는 선진국 문턱에서 이제는 영원히 추방되어야할 부정불량식품은 고도의 지능화, 전문화되어 가는 범법자들의 수법에 비해 단속의 손길이 턱없이 부족하고 요원의 전문화가 시급한 실정인 바, 우리구에서는 담당직원 한사람으로 금년 한해동안 유해식품단속 834건, 제품수거검사 520건등 대단한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50만 구민 나아가서 전 국민의 귀중한 생명에 결정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은 보건범죄 단속차원에서 기필코 이루어져야할 위생과 업무중 가장 중대한 과제인 만큼 담당직원 한사람만으로 감당케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음.</p> <p><처리요구내용></p> <p>○ 50만 구민의 생명을 담보로 식용불가한 공업용 원료, 유해색소, 첨가물 등을 사용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악덕업주가 다시는 이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증원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연구검토가 있으시기 바람.</p> <p>제목 :</p> <p><현황 및 문제점></p> <p>○ 자체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상급기관 지시에 의한 지도확인) - 수동적</p> <p><처리요구내용></p> <p>○ 우리구 적성에 맞는 지도확인을 할 수 없음. (능동적)</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산 업 과</p> <p>청 소 과</p>	<p>제목 : 중소기업육성 및 지도에대한사항및 청소분야에 관한감사</p> <p><현황 및 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동 공장등록사항 현황이 동별 업종별로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세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조례에 의하여 융자를 해주도록 기금을 조성하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음. 2. 종량제 봉투에 대한 재질사양 검토 3. 청소차량 운행일지와 미화원 청소지역을 감사한 결과 현황이 일정치 않아 공정성이 없음. 4. 방림방적, 신촌운수 현장을 방문하여 폐수처리를 점검 <p><처리요구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허가 중소기업 현황파악 및 영세업자 융자확대를 요망 2. 종량제 봉투 비교적 규격 이상없음. 3. 미화원 청소지역 운번제 근무배치 시정요망 4. 방림방적은 견학코스로 활용 필요성 느낌
<p>총 무 과</p> <p>(산 업 과)</p>	<p>제목 : 각동 특별 명예감독관 위촉에 관한 사항</p> <p><현황 및 문제점></p> <p>○ 각동 해당동의 구의회 의원에게 관내 건축, 토목, 하수, 도시가스공사등 각종 공공 공사의 특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상기 각종 공사의 사전통보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 제시</p> <p><처리요구내용></p> <p>○ 각종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해당동 특별 명예감독관(구의회 의원)에게 사전에 공사명, 공사위치, 공사일자 등을 공문으로 반드시 통보할 것과 특별 명예감독관 신분증을 부여할 것.</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산 업 과</p>	<p>제목 : 상품권 할인판매 및 불법유통에 관하여</p> <p><현황 및 문제점></p> <p>○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권중 특히, 중추절이나 연말년시 시즌을 기해 70,000원권이 50,000원으로 할인되어 지정된 업소이외의 버스정류장이나 노상, 구두타이 업소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바, 이는 현행법에 저촉이 되고 있으나 관계공무원은 전혀 적발한 내용이나 행정조치의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업무처리 하였는 바, 이는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p> <p><처리요구내용></p> <p>○ 관계 부처에서는 연말년시를 기해 다시 성행될 불법유통 상품권을 단속하여 본래의 상품권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요함.</p> <p>제목 : 정부대여양곡 대여</p> <p><현황 및 문제점></p> <p>○ 정부대여양곡(대여기간 '82~'86년도 5차) 미수금에 대하여 '95년도말 현재 79가구에 312가마(14,828,190원)를 영세민에게 대여하였으나 현재 까지 상환하지 못하였음.</p> <p><처리요구내용></p> <p>○ 영세민에게 대여한 기간이 10여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결손처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됨.</p> <p>제목 : 도시가스 사용에 관하여</p> <p><현황 및 문제점></p> <p>○ 지역관리소(gas 4군데) 홍보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함.</p> <p><처리요구내용></p> <p>○ 반상회시 지역관리소 위치와 담당구역 및 전화번호 등을 주민에게 주지시켜 주기 바람.</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환 경 과</p>	<p>제목 :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행정조치 불이행</p> <p><현황 및 문제점></p> <p>○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행정조치를 매분기마다 적발 조치하여야 함에도, 관계공무원은 영세업주의 실상과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현장방문이나 정기점검 단속을 기피하고 있어 본 감사반에서 관계공무원을 대동하여 적발 단속되는 과정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로 시정을 요함.</p> <p><처리요구내용></p> <p>○ 관계부서의 공무원은 매분기마다 정기점검을 하여 이상유무업소의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조치나 시정지시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p> <p>제목 : 배출업소 행정처분 세부계획</p> <p><현황 및 문제점></p> <p>○ 배출업소 행정처분 명령 확인이 없음. (현재 대다수가 영업을 운영함)</p> <p><처리요구내용></p> <p>○ 명령 불이행 (대다수)</p>
<p>청 소 과</p>	<p>제목 : 소모품 관리대장 업무관리 기재누락의 건</p> <p><현황 및 문제점></p> <p>○ 정비관리계에서 관장을 하는 소모품 관리대장의 유압류계정란에 재고 및 물품수불 현황중 현실과 장부기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10월 20일경 재고가 전혀없어 600리터를 발주 공급받았으나 검수가 안됐다는 이유로 장부에 전혀 입고기재도 없이 목적에 의거 100% 사용하고도 행정적인 장부기재는 누락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p> <p><처리요구내용></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청 소 과	<p>○ 관계공무원의 책임성있는 행정을 하여야 함은 물론, 현재 약 1주에 한 번정도 결재를 수시로 결재 확인은 물론, 물품이 입고된 즉시 검수 확인하여야 된다고 사료됨.</p> <p>제목 : 청소운영의 문제점</p> <p><현황 및 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변관리 및 분뇨처리 직영으로 구세인력낭비 초래 예) 공변 17군데 청소관리 40명 채용 2) 청소과 전문직 인력 전무 (환경직~화공직) 3) 복지관은 구에서(가정복지과) 운영으로 동장관리 소홀 <p><처리요구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영체제에서 대행 및 위탁으로 구세절약 요망 2) 생활오수 90% 이상으로 전문직, 화공직 1명정도 청소과 보직 요 3) 복지관의 일부 독서실을 직접 동장 책임하에 운용 인력절감 요 <p>제목 : 청소대행업체 위탁문제에 관한 건</p> <p><현황 및 문제점></p> <p>○ 우리구 관내 청소 및 쓰레기 수거는 현재 대행업체 위탁 50%, 직영 환경미화원 40%, 자가수거 10%의 지분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청소사업의 효율성을 들어 전면적인 대행업체 위탁시도가 있다할때 기존 환경미화원의 절대적 수치가 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탁은 지방재정의 이중부담을 초래함으로써 재정적 낭비요소가 될것이 확실함.</p> <p><처리요구내용></p> <p>○ 환경미화원의 필요적 정원이 자연적으로 현격히 줄어들어 청소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때 손익분기점을 잡아 편차가 가장 적은 범위 내에서 부분위탁으로 점진적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며, 지금 당장에는 기요원의 현저한 숫적감소요인이 없음을 감안, 금후 상당기간내에는 위탁확대가 없어야 할 것임.</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청 소 과	<p>제목 : '95 오수정화 벌과금 미징수</p> <p><현황 및 문제점></p> <p>○ '95년도 오수정화 벌과금 미징수</p> <p> <input type="checkbox"/> 금 액 : 63,100,000원</p> <p> <input type="checkbox"/> 건 수 : 157건</p> <p> <input type="checkbox"/> 미징수금액 : 43,000,000원</p> <p> <input type="checkbox"/> 건 수 : 111건</p> <p><처리요구내용></p> <p>○ 미징수금에 대한 독촉장 발급등 회수방안의 근거가 없음.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p>제목 : 정화조 과태료</p> <p><현황 및 문제점></p> <p>○ '92년도 정화조 과태료 부과분의 징수가 저조함.</p> <p><처리요구내용></p> <p>○ '92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부족 등을 감안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여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제목 : 쓰레기 무단투기</p> <p><현황 및 문제점></p> <p>○ 쓰레기 무단투기자가 784건(56,675,000원)을 적발하였으나 과태료 징수 실적이 20%에 불과함.</p> <p><처리요구내용></p> <p>○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보건행정과	<p>제목 :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p> <p><현황 및 문제점></p> <p>○ 하절기 연막소독을 차량소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문제점 즉, 좁은 골목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취약지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할 것과 실효성 없는 방역소독보다 좀더 내실있는 소독을 제시</p> <p><처리요구내용></p> <p>○ 앞으로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골목길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방역소독을 충분히 영구 검토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p> <p>제목 : 주택가 방역에 관한 건</p> <p><현황 및 문제점></p> <p>○ 보건소 업무중 방역사업 및 활동은 예방의학 차원에서 각종 전염병의 발생을 막고 파리, 모기등 그 매개체를 박멸 또는 서식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특히, 관내 대다수 주민들의 관심이 크고 활동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업무인 만큼 우리구에서 제반장비와 인력(차량 3대, 연막기 1대, 동력분무기 1대, 수동식 7대)을 동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장비와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고, 방역업무가 그 특성상 주로 아침, 저녁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p> <p><처리요구내용></p> <p>○ 과거 「새마을운동」이 활발했을 때는 자율방역활동이 원활해서 그 헛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으나, 작금에 이르러 새마을운동의 퇴색과 함께 자율방역이 극히 형식적이고 미온적이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보건소내에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인 바, 예산의 뒷받침등 많은 연구검토가 있기 바람.</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보건행정과	<p>제목 : 시약관리 대장 및 소모품 대장의 기장관리 불처져</p> <p><현황 및 문제점></p> <p>○ 시약관리대장 및 소모품 관리대장의 수불에 있어, 수불 담당직원의 사용목적과 수령자의 확인란에 날인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함에도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고, 업무중 기재착오가 있을시 수정선을 긋고 재기재 하여야 하나 화이트로 지워 수정함은 의혹이 있을뿐 아니라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실정임.</p> <p><처리요구내용></p> <p>○ 시약 및 소모품 수령인은 관리비품 대장의 양식에 의거 물품수령시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또한 장부기재의 착오가 있을시는 실선으로 지운 후 작성자 날인후 수정기재 하여야 된다고 사료됨.</p> <p>제목 : 건강진단수첩의 작성 및 재질의 문제점</p> <p><현황 및 문제점></p> <p>○ 건강진단수첩의 작성과정에 있어 수첩의 인적사항 기재란을 관계공무원이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과다를 이유로 신청인 자자가 기재한 후, 사진을 부착케 하여 보건소장의 명으로 발급을 하고 있어 건강진단수첩의 권위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 수첩의 재질이나 기재란이 현실과 맞지않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 사료되어 사실상 현실에 맞는 양식으로 개선 제작되어야 한다고 사료됨.</p> <p><처리요구내용></p> <p>○ 건강진단수첩의 권위성을 살리기 위해 수첩 인적사항의 기재란을 관계공무원의 수기나 컴퓨터 전산으로 기재하여 수첩의 신뢰성이나 가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요망됨.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첩의 용지가 120mm 백상모조지로 제작되어 있는데 표지는 레자크지로 대체하고, 속지는 페이지를 증가시켜 현재 6개월이나 1년으로 사용란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에 개선을 요망함.</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의 약 과	<p>제목 : 인력동원 충무계획 (3급비밀문건)</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무계획 보관관리 숙지 (담당자 미숙지)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밀취급관리대장 관리철저 요 (기록요령 취급부족)
보건지도과	<p>제목 : 뇌염백신 예방접종자 확진무</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자의 명단기재가 전무함. - 양식의거 : 주소, 성별, 연령 등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재양식에 의거 성명난 기재한 것은 탁상행정의 무책임한 처사로 사실무근한 임의조작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
의 약 과	<p>제목 : 건강진단발급 병원지정 확대</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식품접객업소 건강진단발급 병·의원, 보건소 각 1개 업소임.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이전 지정한 병·의원, 보건소 3개소 임을 감안, 지방자치시대의 주민편의성을 제고하여 현실에 부합한 전 병·의원, 보건소로 확대 지정 운영하여 식품접객종사자의 시간낭비, 소지허가의무위반사항(법적) 기피현상을 탈피하여야 된다고 사료됨.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의 약 과	<p>제목 : 무면허 의료행위 시정촉구의 건</p> <p><현황 및 문제점></p> <p>○ 관내의 의료기관이나 대상업소의 지도감독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나, 각 업소별로 자율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감사반과 관계공무원이 민원의 정보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케한 결과 관내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추정할 수 있는 차드블 입수 확인서를 받아 시정이 요구되는 바, 관계공무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p> <p><처리요구내용></p> <p>○ 현재 민원이나 정보 또는 협회의 단체에서 의뢰하는 업소에 한하여 점검하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의 의혹이 있는 업소는 수시로 지도점검 단속하기 바람.</p>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거하여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구민에게 부담을 주지않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사항과 각종 자료를 확보하여 '96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기 간

1) 1995. 11. 27~12. 3 (7일간)

○ 감사대상기관

- 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각호 해당기관
 - 도시정비국(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 건설국(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 각 동사무소
- 2)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사무
 - 각국 소관별 주요감사 사무별첨

○ 감사반 편성

(가나다순)

위원장	간사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안주영	문종준	권혁필, 김명환, 박정호 배기한, 이일희, 이증식 조길형, 조용호, 최재웅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 속기사

○ 감사일정및 장소

일 정	대 상	장 소	감 사 방 법	비 고
'95. 11. 27 ~ 11. 31	도시정비국 건 설 국 각동사무소	영등포구청 감 사 장	개 별 감 사	※ 장소는 수감기 관에서 선정하 여 수감1일전 에 통보하여야 한다.
'95. 12. 1 ~ 12. 2	도시정비국 건 설 국 각동사무소	영등포구청 감 사 장	합 동 감 사	※ 필요시 현장확 인

○ 감사요령

해당 국·과의 분장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임의 요구하는 분야 일체
(유인물 별도 기재부)

1) 감사방법

-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관한 현황보고, 청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업무별 개별감사를 실시
- 개별감사후 해당국 전반에관한 대한 감사는 질의, 답변형식의 합동감사 실시

2) 감사자료제출요구

-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감사실시 3일전까지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3) 증인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를 출석케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기타 필요시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다.

4) 감사진행순서

- 감사선언 (위원장)
- 위원장의 인사
- 관계공무원의 선서
- 업무현황보고 (간부소개 및 현황보고)
- 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개별감사
-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 위원장의 감사강평
- 감사종료선언

○ 유의사항

1)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6)

- 사생활침해 계류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2) 감사상 주의의무(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8)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행정사무감사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7)

- 감사대상사무가 감사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거나 의결로 제척시켜야 한다.

○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 자료를 감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 1995년도 업무계획서
- 1995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
- 1995년도 3,000만원이상 공사의 추진실적
- 1995년도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 1995년도 각종 민원(진정·청원·기타) 접수처리부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모든 자료는 13부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 일일보고서 및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
- 간사는 감사일일보고서와 의견서를 종합 위원장에게 보고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위원장과 간사가 사전에 초안작성, 전문위원과 검토 후 상정)

○ 본회의 상정의결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주 택 과	<p>제목 : 당산동 현대APT 대지 일부 보상요구권 지하철공사에 기부채납된 부분 보상요구</p> <p><현황 및 문제점></p> <p>○ 현재공사하고 있는 지하철 고속정류장 부분 토지 보상요구는 조합에서 기부채납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지상권 보상 문제는 보상대상이 없으며 단 지상권사용료(공사기간)는 지급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처리요구내용></p> <p>○ 94. 7월 부터(APT등기기준) 공사완료까지 지상권 사용료는 지급이 가 하다고 사료됨(주차장, 녹지부분)</p> <p>제목 : K.B.S별관 위법건축물 무허가 건물(천막창고)조립식 작업장 설치사용 여부</p> <p><현황 및 문제점></p> <p>○ 본건은 영등포소방서로 부터 대형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통보에 의하여 확보한 사항으로 별첨 도면과 같이 무허가건물 천막창고, 조립식 작업장등 무허가 건물이 본관 건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형사고 발생시 진화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임.</p> <p><처리요구내용></p> <p>○ K.B.S는 우리나라 국영방송사로 국익발전을 위한 선도자로서 우리사 회 모든 분야에서 선도 역할을 하여야할 언론매체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사가 위법을 하고 있음. 이는 건축법 제8조 및 9조를 위반한 건축물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조치하고 건축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 조치할 사항 임.</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주 택 과	<p>제목 : 주택사업자 등록에 관하여</p> <p><현황 및 문제점></p> <p>○ 제출서류중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원을 필히 제출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허가하였으나 1년이 다가가도록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음.</p> <p><처리요구내용></p> <p>○ 기간내에 서류보완에 철저를 기할 것.</p> <p>제목 : 업무처리지연에 대하여</p> <p><현황 및 문제점></p> <p>○ 주택과 주택제량제의 경우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직원혹사는 물론이고 많은 민원이 제때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점에 대하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사료됨.</p> <p><처리요구내용></p> <p>○ 업무분담을 조정해서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계증설을 해서라도 업무처리 신속과 민원해결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된다고 사료됨.</p>
도시정비과	<p>제목 : 광고물 간판 내온싸인</p> <p><현황 및 문제점></p> <p>○ 광고물 간판제작업자들이 본인들 마음대로 간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추후에는 상업주가 과태료를 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간판허가업자들의 책임감이 없음.</p> <p><처리요구내용></p> <p>○ 광고물 제작업자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 간판을 제작할 때 불법간판을 해주면 강한 행정처분을 하고 내온싸인등은 허가를 받아 주는일까지 해주어 일반상점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할 것.</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도시정비과	<p>제목 : 광고물단속에 관한 시기조정</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단속을 10월, 11월등 년말에 단속함.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단속을 년초에 시행하여 이에 따른 수입을 잡고 시정조치도 여유있는 시간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96년도부터 년초부터 단속조치 취할 것. <p>제목 : 신길5동 407~3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문제</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길5동 407-9는 '93년 8월 24일 건축허가 신청되어 '93년 12월 1일 준공된 것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4M×8M) 도로로 확보할 때에 주차장 2대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건폐율도 초과됨.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편의에는 도움이 되는 도로로는 보이지만 407-9의 건축물이 있기전에 미리 도시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며, 건물주는 마치 도로로 확정되어 질 것을 예상이나 한 것처럼 양면에 도로폭만큼 문으로 사용되고 있어 마치 특혜가 있는 인상이 짙게 보임.
교통행정과	<p>제목 : 신길1동 451번지 노상주차장(성애병원 앞)</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애병원 남북중앙에 위치한 12m도로상에 양측으로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어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는 불편사항임.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상주차장 계약기간이 95. 3. 1부터 96. 12. 31까지 계약이 체결된 사항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시에는 노상주차장을 재계약하지 말고 성애병원으로부터 적정한 사용료(임대료)를 받아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편의 증진을 기할 사항임.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교통행정과</p>	<p>제목 : 버스 노선신설 요망사항 노량진로 여의도간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노량진역에서 부터 대방동 신길1, 2동 주민의 민원에 대한 사항임.</p> <p><현황 및 문제점></p> <p>○ 93년까지 노량진로 여의도간 운행하던 68번 노선버스가 93년말 부터 운행이 되지 않고 있어 노량진역에서 부터 대방동 신길1동, 신길2동 7만여명의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에 큰불편을 주고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1. 가급적이면 종전 시내버스 68번 노선을 다시운행 요망하고 2. 여의도 63빌딩을 기점으로 노량진, 노량진역, 대방동, 신길1, 2동을 거쳐 여의도를 일주하여 순환노선버스를 신설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중·고등학생의 등하교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p> <p>제목 : 차고지 증명 발급허위 보고</p> <p><현황 및 문제점></p> <p>○ 도림동 243-2 신덕성(차량번호 027065) - 위 신고자가 신고당시 차고지가 아니었음에도 차고지로 신고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철저히한 후 신고수리를 하지 않음. (확인서 징취)</p> <p><처리요구내용></p> <p>○ 신덕성의 신고내용의 잘못과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미흡으로 발생한 이 조사결과로 보아 차후 철저한 서류검토와 현장답사로 신고수리 및 처리를 하기 바람.</p> <p>제목 : 노외주차장관리에 문제점</p> <p><현황 및 문제점></p> <p>○ 주차에 관한 해소책으로 정부에서 차고지 증명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도상으로 주차장의 면적과 차고지 증명으로 발급되는 주차장 공동사용 계약서상의 사용대수(면적)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무제한 발급할 수 있어 제도상 문제가 있음.</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교통행정과	○ 차고지증명(주차장공동사용계약서) 발급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므로서 주차면적 보다 많은 차고지 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망.
교통지도과	<p>제목 :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을 상가 및 공장으로 탈법 임대한 내용</p> <p><현황 및 문제점></p> <p>○ 현재까지 각동에서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음.</p> <p><처리요구내용></p> <p>○ 당 구청에서는 하루속히 불법임대업을 하고 있는 곳을 일제히 조사하여 처리할 것. '96년도 3월까지는 처리하겠다는 교통지도과의 계획임.</p> <p>제목 :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결과</p> <p><현황 및 문제점></p> <p>○ 영등포동 부설주차장 점검결과에 비취 2,000㎡ 이상은 구청소관에서 점검을 하고 있으나 2,000㎡ 이하는 관내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속히 관내 동사무소에 철저히 조사 시정토록 할 것.</p> <p>제목 : 주·정차 위반 5분예고제</p> <p><현황 및 문제점></p> <p>○ 주·정차 위반 5분예고는 말뿐이고 마구잡이 식이므로 위반 딱지를 붙임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시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생업에 직결되는 현장에는 5분예고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주고 복잡한 뒷골목에는 견인하여야 될 것임.</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교통지도과	<p>제목 : 공영주차 요금조정에 대한 건 신규 주차장이 다수 허가되어 주차해소에 기여했다 하나 많은 불법주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p> <p><현황 및 문제점></p> <p>○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주차장요금이 현실에 불합리하여 발생된다고 사료됨.</p> <p><처리요구내용></p> <p>○ 주차장 요금표는 조례로도 조정된 것으로 급지 변경으로 조정이 가하다고 사료됨.</p> <p>제목 : 영등포구 구민회관 전면 무단정차의 관한 건</p> <p><현황 및 문제점></p> <p>○ 영등포구 구민회관 주변의 유료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회관 전면의 항상 무단정차하고 있어 미관 및 계단의 출입이 불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변보행상 지장과 보도블럭 파손이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구민회관 전면 계단앞에 여하한 차를 막론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이 요망됨.</p> <p>제목 : 구자동차매매 센타 양평1가, 당산2가, 문래3가, 경기지점</p> <p><현황 및 문제점></p> <p>○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를 하여 청소를 할 수가 없으며, 또한 대형차량이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불법주차하고 있으며 매매센타 대형차를 그곳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몹시 혼잡하고 인도로 끝까지 주차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경계석과 보도블럭이 파괴되고 있음.</p> <p>○ 대형차를 180도로 주차하고 90도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선을 다시 그리도록 하고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차대번호를 추적하여 차주에게 연락하고 행정조치할 것.</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건설관리과</p>	<p>제목 : 노상주차 대형화물(중장비)</p> <p><현황 및 문제점></p> <p>○ 영등포전지역을 막론하고 대형주차장 시설이 부족현상으로 대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불편을 초래함. 현장 확인결과 정책적으로 정부와 협의물 요함.</p> <p><처리요구내용></p> <p>○ 중장비 차고지 확보를 요함.</p>
<p>교통행정과</p>	<p>제목 : 주차황색선</p> <p><현황 및 문제점>></p> <p>○ 영등포구 관내 주차황색선을 계획없이 그었다 지웠다하는 행정의 무계획을 지적함.</p> <p><처리요구내용></p> <p>○ 확실히 현장 점검하여 막대한 예산을 어려운 곳에 사용토록 당부드림.</p>
<p>건 축 과</p>	<p>제목 : 구분공사의 계약일자 준공일이 부분별로 기간차이가 심하여 일괄성이 없음.(영3동 노인복지 회관 신축)</p> <p><현황 및 문제점></p> <p>○ 신축공사에서 건축공사 준공일 95년 11월 8일 전기공사준공일 95년 12월 6일</p> <p>1. 건축공사 완료와 동시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소규모 공사에 일개월차를 두고 준공처리 계약은 문제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차후 본공사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공사 발주할 것인가?</p> <p>2. 수도배관 가스공사를 주방기구는 96년도 예산에 책정은 잘못이며 이에 문제점 있다.</p> <p><처리요구내용></p> <p>○ 문제점에 대하여 처리 방안을 답하여 처리바라며 급한 내용인 썩크대는 96년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95년 12월 5일 이내로 포괄사업비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현재 노인정 입주상태임 95. 11. 29)</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건 축 과</p>	<p>제목 : 건축물 도로 침범</p> <p><현황 및 문제점></p> <p>○ 영1동 618-173호 지상의 건축물이 도로침범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준공검사를 하여준 것에 대하여 재확인 요청.</p> <p><처리요구내용></p> <p>○ 인근 주민들의 의문점을 풀기 위하여서라도 정확한 건물현황도를 신청 지번과 양옆지번의 건물현황도를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도를 제출 할 것.</p> <p>제목 : 건축과태료 이의 신청에 따른 조치</p> <p><현황 및 문제점></p> <p>○ 이행강제금중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판결된 금액은 법원세입처리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사료됨.</p> <p><처리요구내용></p> <p>○ 법원세입 처리되는 과태료는 적극적으로 구수입으로 잡는게 좋다고 사료됨.</p>
<p>건설관리과</p>	<p>제목 : 공공용지 도로점용료</p> <p><현황 및 문제점></p> <p>○ 점용자들의 많은 세금이 미납되었으며 현장감사를 하고 싶어도 전화번호와 상호명이 기재되지 않았기에 불시에 현장감사를 하기가 어려움.</p> <p><처리요구내용></p> <p>○ 공공용지 점용자의 세금을 빨리 징수하고 미신고자를 동사무소를 통하여 속히 조사토록 지시하고 수시로 감사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 성명, 전화, 정확한 평수, 상호명을 기재할 것.</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건설관리과	<p>제목 : 각종 장애인들의 사무실난입 폭력건에 대하여</p> <p><현황 및 문제점></p> <p>○ 신체, 지체 장애인 및 상의용사, 고엽제환자들의 야시장개설 문제로 인하여 구청 건설관리과의 난입폭력에 구청측의 무방비 대응으로 공권력의 유·무를 의심할 정도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p> <p><처리요구내용></p> <p>○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위의 단체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지 아니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아울러 경찰력을 동원 사법처리도 병행해야 된다고 사료 됨.</p> <p>제목 : 도로점용료 체납처리 건</p> <p><현황 및 문제점></p> <p>○ 도로점용료 체납에 있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체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재산조회 등을 철저히 할 것.</p> <p><처리요구내용></p> <p>○ 체납금에 대해 시효소멸이 되어 가는 '90년도분부터 압류등 조치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p> <p>제목 : 용도폐지에 관하여</p> <p><현황 및 문제점></p> <p>○ 용도폐지 지연 처리(전반적사항임)</p> <p><처리요구내용></p> <p>○ 용도폐지에 있어 1년이 넘도록 지연된 바 지역 주민이 시급히 건축을 하여야 하는데도 늦장 처리됨에 3개월내에 업무처리하는 유기한 문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토 목 과	<p>제목 : 동절기 제설계획</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청 관내 제설함이 충분히 보유되어 있는 바 내용물 자체도 충분한 것으로 보임.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관내는 실제 경사도가 별로 없는 지역이므로 제설함이 약간 있어야 할 것이며 폭설시에는 제설 중장비 이용하는 방법이 사료됨 (현재 보유하고 있는곳도 분실이 되고 있는 상태임) <p>제목 : 도로개설 방치</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길동 290-253간 도로개설이 94년도에 착공하기까지 아무조치 없이 방치한 상태로 있어 인근 주민들에 불편을 주고 있음.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상태로된 이유와 이후의 조치사항을 보고 바람. <p>제목 : 보도 경사로 문제점 지적 대림동 구로1교 진입로교각 불균형</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산동 4가 39 일대 보도가 경사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빙판길일때는 매우 위험한 현실임을 지적. ○ 대림동 교각옆 주민 불편으로 교각을 절단하여야 할 것. <p><처리요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도 예산을 삭감치 않으면 상반기에 조치하겠다 함. ○ 토목과에서 현장 확인 후 처리할 것을 시정 지시함.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토 목 과	<p>제목 : 한강성심병원 옆 공도를 병원에서 전용하고 있음.</p> <p><현황 및 문제점></p> <p>○ 공도전용 사용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신감철계장 확인서 징취)</p> <p><처리요구내용></p> <p>○ 구청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여 '96년도에' 경제블럭공사를 하여 병원측의 도로진입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됨.</p> <p>제목 : 확장도로인접지 지적정리</p> <p><현황 및 문제점></p> <p>○ 소방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접근되어 있는 가옥주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철거를 해놓고도 서류를 정리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기관에서는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망.</p> <p>제목 : 버드나룻길 가로등개량공사 노들길 가로등 개량공사</p> <p><현황 및 문제점></p> <p>○ 가로등 설치의 문제점은 지주(철전주)설치 및 전선결선 접지공사는 양호하나 한전전주와 전주간의 설치 배선된 수용가의 저압선에 가로등 시설 지주(철전주)가 인접되어 있어 진동과 바람에 흔들려 피복이 파손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위험성이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접선된 지주(철전주)의 절연체(베크류)를 부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것.</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하 수 과	<p>제목 : 하수관에 불법설치된 지장물(상수도, 가스관, 전화, 전기이설)</p> <p><현황 및 문제점></p> <p>○ 하수관내 불법지장물 설치로 인하여 오물이 걸려있어 악취등으로 주민 불편 뿐만 아니라 물이 원만히 흐르지 못하고 있어 주택지하실로 침수 되는등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임.</p> <p><처리요구내용></p> <p>○ '95. 11. 29 현재 25개소 대상중 이설완료는 13개소에 불과함. 빠른시일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주시고 이행치 않을 시 해당부서를 고발조치 하시기 바람.</p>
총 무 과	<p>제목 : 각동에서 신고로 처리되는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의 문제점에 대하여</p> <p><현황 및 문제점></p> <p>○ 각동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분담이 적소에 배치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각 동사무소에 신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이를 신속히 시정하여야 된다고 사료됨.</p> <p><처리요구내용></p> <p>○ 각동에서는 기술직공무원 건축직 및 토목직 직원을 건축담당직으로 배치하여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되어야 된다고 사료됨.</p>
각동사무소	<p>제목 : 영등포구 구 전도로 각동사무소내 4m 도로 및 이면도로 20m 이상 대로변 주차장 안내표지판에 대해</p> <p><현황 및 문제점></p> <p>○ 각동 동사무소내 4m이면 도로에는 소방도로와 보행로로 되어있는 도로는 절대 주차금지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서 각 동사무소의 단속 소홀로 야간에도 무단정차가 난무하고 8m~16m 도로에는 20 : 00시~08 : 00시로 표지판에는 표기하여 야간주차장 허용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주차하지 않고 주간에 정차하고 있으며 20m도로 표지판에는 견인지역 그림과 절대주차구역이라고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단속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사료됨.</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각동사무소	<p>〈처리요구내용〉</p> <p>○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주차안내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엄격한 단속을 하여 주정차단속에 실효를 거두기 바람.</p> <p>제목 : 신축건물 준공후 불법 증개축의 문제점</p> <p>〈현황 및 문제점〉</p> <p>○ 동사무소에서 건물신축준공검사후 건물관리 소홀로 불법 증개축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대다수가 건물준공검사 이후 1, 2년이내 불법이 이루어 지고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동사무소에서 건물신축 및 증개축시, 준공검사일시를 파악하여 리스트를 작성해 그 이후로 1개월에 1, 2회씩 중점관리하면, 불법 증개축건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p>
하 수 과	<p>제목 : 하수관 직선 연결요망사항 (신길1동 116-17 대신시장 동쪽편 15m 도로)</p> <p>〈현황 및 문제점〉</p> <p>○ 현재 하수관이 구거부지 자연도로 지하로 굴곡 매립되어 있어 우기에 는 항상 범람하고 있음. 별지도면과 같이 직선으로 연결시키면 인근주택 50여 세대에 불편한 하수처리가 잘될 것으로 사료됨.</p> <p>〈처리요구내용〉</p> <p>○ '96년도 우기전에 약 30M정도 직선(별첨도면)으로 연결시키면 항구적인 범람상태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사려됨.</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신길 4동</p>	<p>제목 : 동 건축증축신고</p> <p><현황 및 문제점></p> <p>○ 신길4동 204-11 건축주 김장곤 상기인의 증축허가 신청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48㎡를 증축토록 허가 하였으나, 현장답사 결과 허가 면적보다 16㎡가 늘어난 64㎡ 었음.</p> <p><처리요구내용></p> <p>○ 차후에는 준공검사시 허가기준과 면적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겠으며, 준공후에는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의조치 하기 바람.</p>
<p>건설관리과</p>	<p>제목 : 수도굴착공사, 가스굴착공사, 하수도굴착공사, 기타지하매설물 등은 예산낭비와 시민 불편이 엄청나다고 본다.</p> <p>모든 공사발주시 현장에 시공회사와 주무과 책임자 설명을 기재하여 불편사항이 있을시 즉시 문의하므로 구민이 궁굼함을 해소 된다고 하는데 96년 공사부터 대책 여부</p> <p><현황 및 문제점></p> <p>○ 외부, 내부의 발주공사를 우리구 주인인 구청장이 통합 관리하여 예산 낭비 및 시민불편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향후 방향을 말하시요.</p> <p><처리요구내용></p> <p>○ 굴착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망됨.</p> <p>제목 : '93~'94년도 정비구역 사후 관리</p> <p>- 구. 철우(아), 건양병원간 조광시장, 영일시장, 영등포 교회앞길 주정차의 쓰레기 및 상품방치 관계 처리문제(노상적치물, 노상시설물)</p> <p><현황 및 문제점></p> <p>1. 인근주민에게 하절기에 버린 쓰레기로 냄새가 대단하다는 진정내용임.</p> <p>2. 주정차 방치로 통과차량이 불편 해소방안</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건설관리과	<p><처리요구내용></p> <p>상주 감시로 예방할 것</p> <p>제목 : 도로상의 불법사용문제</p> <p><현황 및 문제점></p> <p>○ 양평동3가 30-7호, 8호 앞에 도로 4m~6m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시에 위험하므로 주민의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p> <p><처리요구내용></p> <p>○ 건설관리과에서 현장을 확인후 대책 수립 보고</p>
토 목 과	<p>제목 : 도로불법 굴착관리 문제점에 대하여</p> <p><현황 및 문제점></p> <p>○ 관내 도로굴착허가 문제에 대하여 구청 토목과에서 허가하는 각종사업 굴착허가가 일선 동사무소에 제때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굴착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 굴착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야기됨.</p> <p><처리요구내용></p> <p>○ 우선 우리구 각실, 과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선 동사무소에 신속히 통보하여 허가 유.무를 제때에 확인이 되어야 하며, 불법인 경우에는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됨.</p>
공원녹지과	<p>제목 : 공중변소관리를 일원화 하는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공중변소는 공 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공동변소는 동장이 관리하며, 실제관리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데</p> <p><현황 및 문제점></p> <p>○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변소 관리비와 공동변소 관리비 즉, 청 소과에서의 관리비가 상이하므로 관리자의 인건비를 일원화하기 위해 서는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공원녹지과	<p>〈처리요구내용〉</p> <p>○ 공중변소와 공동변소의 관리를 일원화 방안으로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p>
감 사 실	<p>제목 : 노들길과 파천교의 이면도로 정비의 건</p> <p>〈현황 및 문제점〉</p> <p>○ 중기 불법주차, 기계적치, 자동차 폐품, 공업용 드럼, 폐.기계류 및 폐기물 등등.</p> <p>〈처리요구내용〉</p> <p>○ 구청 어느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기 곤란하며, 감사실에서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 작전하여 처리 요망됨.</p>